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10

발의연월일 : 2023. 11. 23.
발의의원 : 곽동환 의원, 김은영 의원, 최재규 의원

1. 개정이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및 학예 진흥을 위해 별도의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실현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달성군민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명 변경

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1조제8항”을 “제11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을 “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교육경비의 보조)”를 “(교육경비의 보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을 “보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지원기준, 산출방법, 전출시기 등은 군수와 대구광역시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을 “제3조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경비”를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경비”로 하고, “따른다”를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 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1조제8항 및 제9항----------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에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② 군수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지원기준, 산출방법, 전출시기 등은 군수와 대구광역시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수가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가 하나의 회계연도 동안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군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 범위로 한다.	**제5조(보조기준액의 제한)**----------제3조제1항----------.
제6조(준용규정) 교육경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준용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경비----------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2023.10.24. 일부개정·시행)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 ·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 · 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 · 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 · 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